[별첨2]

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

구분	가점	세부내용 및 우대전형
취업지원 대상자*	-	ㅇ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·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장애인	각 전형별 만점의 5%	ㅇ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」 제2조의 장애인
청년	서류전형 만점의 1% (본인)	ㅇ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, 제5조, 제6조 등에 따른 청년(만 15세~34세)인 자

* 단,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른 가점은 미적용함(동점자 처리에만 활용)

** 두 개 이상의 가점 제출 시, 점수가 높은 가점 한 개만 인정함